

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

| 분야 1 |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| | | | | 담당부서 | 감사파트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|------|------|
| 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| |
| | | | | 예 | 보완필요 | |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
| |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 | | |
| 인권존중 정책선언 | 1 | 1 |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 선언을 했다. | 7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(감사평가팀-6) ○ 직원 인권보장선언 결의대회 개최(감사평가팀-305) | | |
| | 2 | 2 |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. | 6 | 1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(감사평가팀-777) ○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직원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(감사평가팀-1527) ○ 2019년 인권경영 맞춤형 컨설팅(감사평가팀-1836) | | |
| | 3 | 3 |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,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었다. | 6 | 1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(감사평가팀-6) ○ 직원 인권보장선언 결의대회 개최(감사평가팀-305) ○ 인권경영 선언문 공유 및 확산(감사평가팀-2061) ○ 공단 홈페이지 윤리인권경영 신설(감사파트-572) | | |
| 인권영향 평가정기 적실시 | 1 | 1 |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. | 7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(UN 인권 이행지침 반영) ○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실행지침(감사평가팀-2029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조(정의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4조(기본원칙) | | |
| | 2 | 2 |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·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. | 5 | 2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(감사평가팀-777) ○ 인권경영 변화관리자 구성 및 운영(감사파트-316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(제19조 구성) | | |
| | 3 | 3 |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| 7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 인권영향평가 기본계획(감사평가팀-720) ○ 2020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(감사파트-622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31조(인권영향평가 실시) | | |
|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필요 조치 | 1 | 1 |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. | 6 | 1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권경영위원회 구성(감사평가팀-90) ○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실행지침(감사평가팀-2029) ○ 윤리경영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변경(감사파트-204) ○ 2020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(감사파트-259) ○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위촉(감사파트-723) | | |
| | 2 | 2 |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 한다. | 7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파트(윤리경영, 인권경영 전담부서) 신설(경영기획팀-5069) ○ 윤리경영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변경(감사파트-204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15조(전담조직) | | |
| 인권경영 성과 | 1 | 1 |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·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수렴한다. | 5 | 2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 인권영향평가 기본계획(감사평가팀-720) ○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(감사평가팀-777) ○ 인권경영 변화관리자 구성 및 운영(감사파트-316) ○ 2020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(감사파트-622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31조(인권영향평가 실시) | | |
| | 2 | 2 |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. | 6 | 1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년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종합 결과보고(감사파트-227) ○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19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(감사파트-384) | | |

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|---|---|---|--|--|--|--|--|
| | 3 |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. | 6 | 1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년 인권경영 성과 클린아이 게재 ○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보고서 공유 및 전파(감사파트-225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32조(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등) |
| 구제절차 마련 | 1 |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. | 6 | 1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5조(인권경영의 이해) ○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9조~제65조(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대응)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33조(고충처리위원회) ○ 공단 취업규정 제63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4조~제29조(인권의 구제) |
| | 2 |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(UN 인권 이행지침 반영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(제4조 기본원칙) |
| | 3 |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임직원 성희롱 예방운영 시행내규 제5조(고충상담창구) ○ CEO 이사장 핫라인 개설 및 운영(감사파트-565) ○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추가(감사파트-656) ○ 공단 홈페이지(인권경영) 인권구제 신설(감사파트-572) |

| 분야 2 | | 고용상의 비차별 | | | | | 담당부서 | 경영지원팀 | |
|--------|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고용상비차별 | 1 |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○ 근로기준법 제6조(균등한 처우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6조(고용상의 차별금지) ○ 공단 인사규정 제7조(채용원칙) ○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조(시험의 방법) ○ 희망보직제도 운영지침(경영지원팀-5440) | |
| | 2 |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복리후생 규정(제2조 적용범위) ○ 공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(제62조~제69조) ○ 2020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(경영지원팀-690) ○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점수 향상 및 지급대상 일원화(경영기획팀-1289) | |
| | 3 |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·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 | 6 | 1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의4(인사원칙의 사전공개) ○ 2020년 교육훈련 기본계획(경영기획팀-8196) ○ 2020년 부족역량 및 자기개발 희망교육 수요조사(경영지원팀-778) ○ 2020년 교육훈련 세부 계획(경영지원팀-1136) | |
| | 4 | 노동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인사규정 제31조(신분보장) | |
| | 1 | 공단은 여성노동자를 모집·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기준법 제6조(균등한 처우) ○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○ 공단 인사규정 제7조(채용원칙) ○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조(시험의 방법) ○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 모집과 채용) | |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|--|--|--|---|
| 고용상남 녀차별 | 2 |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(경영지원팀-690) ○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) ○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점수 향상 및 지급대상 일원화(경영기획팀-1289) ○ 여성인재 역량강화 교육 용역 추진(경영지원팀-5133) ○ 여성직원 전문가 상담 심화프로그램 운영(경영기획팀-5042) |
| | 3 |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·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의4(인사원칙의 사전공개) ○ 2020년 교육훈련 기본계획(경영기획팀-8196) ○ 2020년 부족역량 및 자기개발 희망교육 수요조사(경영지원팀-778) ○ 2020년 교육훈련 세부 계획(경영지원팀-1136) ○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) |
| | 4 |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인사규정 제31조(신분보장) ○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 정년 퇴직 및 해고) |
| 비정규직 근로자비 차별 | 1 | 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) ○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8조(차별적 처우의 금지) |
| | 2 |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(제11장 안전보건후생복지 보장) |
| | 3 |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한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(2017년 기간제→무기계약직) ○ 공공부문 비정규직(기간제) 채용사전심사제 운영(경영지원팀-689. 4509) |

| 분야 3 | | 노사협의회 자유 보장 | | | | | 담당부서 | 경영지원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결사·단체 교섭의자 유 | 1 | 공단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| 7 | | | | | |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1조(목적) |
| | 2 | 공단은 노사협의회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. | 6 | 1 | | | | |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11조(사용자의 의무) |
| | 3 | 공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20조(협의회 회의)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27조(협의사항) |
| 노사협의 회활동불 이익처우 금지 | 1 | 노동자가 노사협의회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| ○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제81조 부당노동행위) |
| | 2 | 노사협의회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| ○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제81조 부당노동행위) |
| 단체교섭 보장및성 실한이행 | 1 | 공단은 노사협의회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. | 6 | 1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20조(협의회 회의)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27조~제31조 |
| | 2 | 공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 | 6 | 1 | | | | |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22조(자료의 사전 제공) |

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|---|--|--|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3 | 공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단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. | 7 | | | | | | | ○ 공단 노사협의회 관리규정 제17조(협의회의 구성) |
|--|---|--|---|--|--|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분야 4 | | 강제 노동의 금지 | | | | | 담당부서 | | 경영지원팀 | |
|----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|---|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 |
| 강제노동 의금지 | 1 |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 제7조(강제근로의 금지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8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 | |
| | 2 |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,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. | 7 |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 제3조~5조(근로조건 기준, 결정, 준수) | |
| | 3 | 공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| ○ 공단 취업규정 제14조(근무시간) ○ 일 생활 균형 캠페인 실시(경영지원팀-6585) ○ 유연근무제 운영(탄력근무제도, 보상휴가제, 원격근무제, 시간선택제 등) | |
| | 4 | 공단은 노동자를 폭행, 협박,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 제7조(강제근로의 금지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8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 | |
| | 5 |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. | 7 |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 제26조(해고의 예고) ○ 공단 인사규정 제38조의2(퇴직의 예고) | |

| 분야 5 | | 아동노동의 금지 | | | | | 담당부서 | | 경영지원팀 | |
|-------------|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|---|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 |
| 연소자고 용금지 | 1 |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) ○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2(채용제한연령) | |
| | 2 | 공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) ○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2(채용제한연령) | |
| | 3 |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. | 7 |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) ○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2(채용제한연령) | |
| | 4 | 공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,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. | 7 | | | | | | ○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2조(구비서류) | |

| 분야 6 | | 산업안전 보장 | | | | | 담당부서 | | 혁신기획팀 | |
|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|--|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 |
| | 1 |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 이도록 유지한다. | 6 | 1 | | | | | ○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(제43조 안전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) ○ 2020년 정기위험성평가 실시계획(혁신기획팀-3379) ○ 정기 안전점검의 날 홍보 및 안전점검 실시 | |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|--|--|---|
| 환경경영 체제수립 및유지 | 1 |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. | 5 | 2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년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 계획(혁신기획팀-946) ○ 코로나19 장기 휴장에 따른 에너지 절감 계획(혁신기획팀-1577) ○ 2020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(혁신기획팀-1860) ○ ECO 건강증진 실천운동 친환경 경영 운전 리포트 운영(혁신기획팀-2852) |
| | 2 |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. | 6 | 1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태점검(혁신기획팀-3402) |
| 환경정보 의공개 | 1 |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. | 6 | 1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년 사전정보공개 등록(전기, 상하수도, 가스, 열사용 현황 공개) ○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치 ○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(경영기획팀-4265) ○ 관광지 시설 홈페이지 날씨정보 제공 개선(경영기획팀-8040) |
| | 2 |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,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한한다. | 7 | | | | | |
| 예방적접 근의원칙 | 1 |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. | 6 | 1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캠페인 실시 ○ 2020년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 계획(혁신기획팀-946) ○ 정기 환경정비의 날 시행(혁신기획팀-2963) ○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(혁신기획팀-3118) ○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폭설대응 장비기능 훈련(혁신기획팀-3014) |
| 비상계획 수립 | 1 |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. | 6 | 1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대응 비상대책회의 실시 ○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 편성 운영(혁신기획팀-299) ○ 2021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(혁신기획팀-3388) ○ 2020년 비상연락망 점검 계획(혁신기획팀-2980) |
| | 2 | 공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 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| 6 | 1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추진계획(혁신기획팀-63) ○ 2020년 상반기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훈련(혁신기획팀-1626) ○ 2020년 겨울철 재난 대비 장비기능 훈련 실시(혁신기획팀-3103) ○ 정기 화재예방 및 자위 소방훈련 실시 |

| 분야 10 | | 정보 인권보호 | | | | | 담당부서 | 경영지원팀 | |
|----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정보 인권 보호 | 1 | 공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공단이 수집,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 보호법(제29조 안전조치의무) ○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기본계획 수립(경영지원팀-2876) ○ 개인정보보호 절차서(경영지원팀-3003) ○ 개인정보 재해재난 절차서 제정(경영지원팀-3124) ○ 2020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 등록(경영지원팀-3556) | |
| | 2 |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, 공개되어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 보호법(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) | |
| | 3 |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,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 방침 게시 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 | |

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|---|--|--|--|--|--|--|
| | 4 |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| ○ 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(경영지원팀-3018) ○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(경영지원팀-3063) ○ 2020년 개인정보 내부관리 기본계획 이행실태 점검(경영지원팀-3091) ○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(경영지원팀-3133) |
| | 5 |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. | 7 | | | | | | ○ 2020년 공단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현행화(경영지원팀-2945) ○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 교육 및 관리감독(경영지원팀-3017) ○ 개인정보 유출방지, 웹 취약점 점검 실시 결과(경영지원팀-3157) |

| 분야 11 | | 직원 인권보호 | | | | | 담당부서 | 경영지원팀 | |
|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폭력예방 | 1 | 공단은 나이, 성별, 노조활동, 성과,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취업규정(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) | |
| | 2 | 공단은 규정에 없는 징벌적 성격의 교육 훈련을 수행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취업규정(제61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) | |
| | 3 | 공단은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 | 6 | 1 | | | | ○ 공단 취업규정(제62조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) ○ 공단 취업규정(제65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) | |
| 성폭력예방과 구제 조치 | 1 | 성희롱 등 성폭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임직원 성희롱 예방운영 시행내규(제5조 고충상담창구) ○ 공단 임직원 성희롱 예방운영 시행내규(제7조 고충신청) | |
| | 2 | 성희롱 등 성폭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임직원 성희롱 예방운영 시행내규(제8조 상담 및 조사) ○ 공단 임직원 성희롱 예방운영 시행내규(제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) | |
| | 3 | 성희롱 등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복리후생 규정(제22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) ○ 공단 임직원 성희롱 예방운영 시행내규(제6조 성희롱 예방교육) | |
| 일가정양립 | 1 | 공단은 일·가정양립을 위한 문화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한다. | 7 | | | | | ○ 출산 및 모성보호 지원제도 운영(휴가, 휴직, 모성보호시간) ○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자녀 출산용품 선물 ○ 일가정 양립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배포(경영지원팀-2753) ○ 수능 수험생 직원자녀 격려(경영지원팀-6055) ○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제도 운영(경영지원팀-6288) | |
| 휴식권 | 1 | 공단은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(제43조 휴식시간) ○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(제24조 근로시간) ○ 공단 취업규정(제15조 휴식시간) | |
| | 2 | 공단은 노동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한다. | 7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및 부여기준(경영지원팀-5807) | |
| | 3 | 공단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을 제공한다. | 5 | 2 | | | | ○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제79조 휴게시설)준수 | |
| | 4 | 공단은 양질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나 공휴일에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일체의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. | 7 | | | | | ○ 최고경영자의 직원 인권보장선언 결의대회(감사평가팀-305) ○ 일 생활 균형 캠페인 실시(경영지원팀-6585) ○ 공단 갑질근절 가이드라인(감사파트-996) | |

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사업(관광숙박) 인권영향평가 결과

| 분야 1 | | 공정운영 | | | | | 담당부서 | 산장관광지, 칼봉산휴양림, 자라섬캠핑장, 연인산캠핑장 | |
|------|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공정운영 | 1 | 공단은 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(차별, 권리 제약 등)없이 운영하고 있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고객센터 현장 운영 시행내규(제1조 목적) | |
| | 2 | 공단은 성희롱, 성폭력 방지 대책 및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. | 7 | | | | | ○ 레저사업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게시(레저사업팀-2908) ○ 사업경영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게시(사업경영팀-22) | |
| | 3 | 공단은 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및 시설이용문의 게시판 운영 | |
| | 4 | 현장 직원에게 적정 업무량과 수행시간을 부여하고 있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취업규정(제14조의2 근무시간 등의 변경) ○ 공단 유연근무제 운영 시행내규(제7조~10조 탄력근무제 등) ○ 당직 및 특별근무 편성표 | |
| | 5 | 시설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장 리플렛을 고객 응대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사업장별 홍보 리플렛 수정 및 제작(혁신기획팀-3398) | |

| 분야 2 | |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| | | | | 담당부서 | 산장관광지, 칼봉산휴양림, 자라섬캠핑장, 연인산캠핑장 |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| 1 |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다. | 7 | | | | | ○ 산장관광지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(사업경영팀-998) ○ 칼봉산휴양림 장애인 우선예약제 운영(사업경영팀-1414) ○ 자라섬캠핑장 신규 안내소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설치 ○ 자라섬캠핑장 유모차 및 휠체어 무료대여 운영(레저사업팀-2649) | |
| | 2 |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요금을 운영하고 있다. | 7 | | | | |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생계급여수급자 30% 감경 | |
| | 3 | 시설은 장애인 주차장 및 승강기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. | 7 | | | | | ○ 사업경영팀 배려존(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) 설치(사업경영팀-2288) ○ 자라섬캠핑장 7개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○ 연인산캠핑장 5개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| |

| 분야 3 | | 근무자 인권보호 | | | | | 담당부서 | 산장관광지, 칼봉산휴양림, 자라섬캠핑장, 연인산캠핑장 | |
|----------|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근무자 인권보호 | 1 | 공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,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. | 7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(제1조 목적,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) ○ 공단 취업규정 제14조(근무시간) ○ 유연근무제 운영(탄력근무제도, 보상휴가제, 원격근무제, 시간선택제 등) ○ 일 생활 균형 캠페인 실시(경영지원팀-6585) | |
| | 2 | 공단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규정,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. | 7 | | | | | ○ 근로기준법 제7조(강제근로의 금지) ○ 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) ○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2(채용제한연령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8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 | |
| | 3 | 공단은 근로자가 인권을 침해당했을 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. | 7 | | | | | ○ 공단 익명제보(헬프라인)시스템 운영(감사파트-67) ○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CEO 청렴소통 핫라인 운영(감사파트-565) | |
| | 4 | 근무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. | 5 | 2 | | | | ○ 산장관광지 휴게공간 운영방안(사업경영팀-1460) ○ 칼봉산휴양림 내 휴게실 조성(사업경영팀-1681) ○ 자라섬캠핑장 직원휴게실 설치 ○ 연인산캠핑장 휴게공간 조성(레저사업팀-3118) | |

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|--|--|--|--|--|---|
| 5 |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여 산업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안전보건법(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○ 정기 공단 전 부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○ 공단 전 직원 안전용품 일괄구매(혁신기획팀-1727) ○ 산장관광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실시(사업경영팀-169) ○ 레저사업팀 전열기기 사용금지 및 화재 안전교육 실시(레저사업팀-1051) ○ 2020년 자라섬캠핑장 우기(장마철)대비 도상 모의훈련(레저사업팀-1118) |
|---|---|---|--|--|--|--|--|--|---|

| 분야 4 | | 고객관리 단계 | | | | | 담당부서 | 산장관광지, 칼봉산휴양림, 자라섬캠핑장, 연인산캠핑장 | | | |
|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 |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 | |
| 고객관리 단계 | 1 | 공단은 사업 운영 시 고객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및 시설이용문의 게시판 운영 ○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(혁신기획팀-1594) ○ 자라섬 인근 마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(레저사업팀-1403) | | |
| | 2 | 공단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고객서비스현장 준수 ○ 관광지시설 고객서비스 이행기준 준수 | | |
| | 3 | 공단 측의 실책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20년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○ 산장관광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(사업경영팀-1200) | | |
| | 4 | 공단의 사업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환불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(제8조 시설 사용료 환급) ○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(제19조 입장료 등의 반환) ○ 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관리운영 조례(제10조 시설사용료 환급) ○ 가평군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관리운영 조례(제4조 시설사용료) | | |

| 분야 5 | | 사업장 안전기준 | | | | | 담당부서 | 산장관광지, 칼봉산휴양림, 자라섬캠핑장, 연인산캠핑장 | | | |
|-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 |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 | |
| 사업장 안전기준 | 1 | 공단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의 재난안전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년도 산장관광지 재난안전관리 계획(사업경영팀-226) ○ 산장관광지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수립(사업경영팀-1850) ○ 칼봉산자연휴양림 재난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(사업경영팀-1894) ○ 2020년도 자라섬캠핑장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(레저사업팀-123) ○ 자라섬캠핑장 재난안전관리 매뉴얼(레저사업팀-2118) ○ 2020년 연인산캠핑장 재난안전관리 계획(레저사업팀-165) ○ 연인산다목적캠핑장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 작성(레저사업팀-1991) | | |
| | 2 | 시설 운영 시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안전보건법(제105조 유해인자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) ○ 산업안전보건법(제125조 작업환경측정) ○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(제55조 작업환경측정) ○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(제74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) ○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20년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○ 산장관광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(사업경영팀-1200) | | |
| | 3 |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물안전법 시행령(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) ○ 정기 전기안전점검, 소방점검 실시 ○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○ 하계(우기), 동계(동절기) 대비 시설물 정기 점검 실시 ○ 연인산캠핑장 정기 승강기점검 실시 | | |

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|--|--|--|--|--|--|
| 4 | 숙박시설 특성상 벌, 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장관광지 병충해 방제 작업 실시(사업경영팀-1094) ○ 칼봉산자연휴양림 병충해 방제 실시(사업경영팀-1413) ○ 칼봉산휴양림 숙박시설 유해조수 주의 안내판 설치(사업경영팀-2228) ○ 자라섬캠핑장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설치 ○ 자라섬캠핑장 병충해 예방 및 방역(레저사업팀-1351) ○ 연인산캠핑장 해충주의 안내 표지판 제작(레저사업팀-2209) |
|---|--|---|--|--|--|--|--|--|

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사업(교통약자이동지원) 인권영향평가 결과

| 분야 1 | | 공정운영 | | | | | 담당부서 | 교통복지팀 | |
|------|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공정운영 | 1 | 공단은 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(차별, 권리 제약 등)없이 운영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○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제22조 수탁자의 의무) |
| | 2 | 공단은 성희롱, 성폭력 방지 대책 및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. | 7 | | | | | | ○ 공단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비치(문화체육팀-39) |
| | 3 | 공단은 시설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. | 7 | | | | | | ○ 공단 홈페이지 고객 소리 및 시설이용문의 운영 |
| | 4 | 현장 직원에게 적정 업무량과 수행시간을 부여하고 있다. | 6 | 1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취업규정(제14조의2 근무시간 등의 변경) ○ 공단 유연근무제 운영 시행내규(제7조~10조 탄력근무제 등) ○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인력운영 계획(문화체육팀-3920) ○ 일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배차 및 근무시간 변경 |
| | 5 | 시설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장 리플릿을고객 응대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각적인 홍보를 위한 교통약자 홍보 리플릿 제작계획(교통복지팀-3132) ○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홍보 리플릿 제작(교통복지팀-3213) |

| 분야 2 | |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| | | | | 담당부서 | 교통복지팀 |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| 1 | 교통약자이동지원에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가 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) ○ 정기 안전점검의 날 '특별교통수단 차량' 점검 실시 ○ 특별교통수단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및 안전관리(교통복지팀-267) ○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(교통복지팀-350) ○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(교통복지팀-615) |
| | 2 |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있어 안전장비 보유 및 비치되어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교통수단 안전바 비치(교통복지팀-1227) ○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설치(교통복지팀-2554) ○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통수단 음주측정기 설치(교통복지팀-2179) ○ 교통약자 안전운행 경보시스템 설치(문화체육팀-3422) ○ 특별교통수단 전동스쿠터 고장(교통복지팀-1079) |
| | 3 |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원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제23조 교육) ○ 신규직원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(교통복지팀-144) ○ 특별교통수단 안전운전교육 실시(교통복지팀-284) ○ 특별교통수단 안전운전교육 실시(교통복지팀-2256) |
| | 4 |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. | 7 |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수단 특별 운영계획(교통복지팀-548) ○ 특별교통수단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방안(교통복지팀-1607) ○ 특별교통수단 즉시-콜 운영(교통복지팀-2281) ○ 교통약자 및 운전원 안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개선(교통복지팀-2478) ○ 동절기 안전운행 및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방안(교통복지팀-2794) |

| 분야 3 | | 근무자 인권보호 | | | | | 담당부서 | 교통복지팀 | |
|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근무자 인 권보호 | 1 | 공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,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기준법(제1조 목적, 제5조 근로조건 준수) ○ 공단 취업규칙 제14조(근무시간) ○ 유연근무제 운영(탄력근무제도, 보상휴가제, 원격근무제, 시간선택제 등) ○ 일 생활 균형 캠페인 실시(경영지원팀-6585) | |
| | 2 | 공단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규정,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기준법 제7조(강제근로의 금지) ○ 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) ○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2(채용제한연령) ○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8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 | |
| | 3 | 공단은 근로자가 인권을 침해당했을 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. | 6 | 1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익명제보(헬프라인)시스템 운영(감사파트-67) ○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CEO 청렴소통 핫라인 운영(감사파트-565) | |
| | 4 | 근무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. | 5 | 2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대기실 설치 ○ 운전원 대기실 시설 개선 실시(교통복지팀-3168) | |
| | 5 |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여 산업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안전보건법(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○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제23조 교육) ○ 정기 공단 전 부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○ 공단 전 직원 안전용품 일괄구매(혁신기획팀-1727) ○ 교통약자 및 운전원 공공서비스 혁신(교통복지팀-489) ○ 교통약자 및 운전원 안전을 위한 차량개선(교통복지팀-2478) ○ 특별교통수단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관리 물품 구입(교통복지팀-2892) | |

| 분야 4 | | 고객관리 단계 | | | | | 담당부서 | 교통복지팀 | |
|---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고객관리 단계 | 1 | 공단은 사업 운영 시 고객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및 시설이용문의 게시판 운영 ○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(혁신기획팀-1594) | |
| | 2 | 공단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제22조 수탁자의 의무) ○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) ○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운영방법 개선(교통복지팀-1850) | |
| | 3 | 공단 측의 실책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보험 가입 | |
| | 4 | 공단은 고객의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) ○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연중무휴 운영 ○ 특별교통수단 즉시-콜 운영(교통복지팀-2281) | |

| 분야 5 | | 사업장 안전기준 | | | | | 담당부서 | 교통복지팀 | |
|------|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---|
| 항목 | 연번 | 지표 | 답변결과 | | | | | 비고 | 추진실적 및 근거 |
| | |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오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 | |
| | 1 | 공단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의 재난안전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수립(교통복지팀-2300) | |
| | 2 |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보험 가입 | |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--|--|
| 사업장 안전기준 | 3 |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 | 7 | 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) ○ 매월 안전점검의 날 '특별교통수단 차량' 점검 실시 ○ 특별교통수단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및 안전관리(교통복지팀-267) ○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(교통복지팀-350) ○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(교통복지팀-615)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--|--|